



세상사 叢書 (3038) **마이뉴스/정커레신문/경향신문/뉴스1/노컷뉴스/프레시안/뉴스앤뉴스/민중의소리**

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 세상사 叢書

새창으로 열람 | 2018.10.11 09:13 | http://blog.daum.net/can021c

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노인들의 4가지 고통, 빈병고무...그 끝엔 '죽고 싶다' 사람을 만날 수도, 병원을 갈 수도 없는 고통의 끝판왕 '가난' 노인 3명 중 1명 절대적 빈곤... 전체 저소득층보다 노인저소득층 2배 도시에서 오히려 더 높은 무연고사망... 전체 40%가 노인 "바라건대 보살핌 못 받는 쪽방촌 노인들...가족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이호선 "내 할아버지의 고통서, 내 할머니의 가난문제로 인식 전환해야" '나도 저렇게 늙을까' 끔찍한 노년의 삶, 청년들에게 절망 학습시켜

**2020 하루노인이온다**

노인의 90%가 하루로 진행되는 삶,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앞으로 5년 가장 최악의 노후통화가 시작된다

**빈곤, 고독, 무위고, 질병**

##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 노인빈곤율 47.7%
- 노인자살율; 10만명당 80.3명
- 65세 이상 노인의 71%, 자녀와 따로, (48% 가 부부, 1인 독거 23%): 2014년 65%

이전 소득 (단위: 원)

75만 7000

65만 6000

+15.4%

2013년 4분기 | 2014년 4분기

상대빈곤율 (단위: %)

47.9

43.8

-4.1%p

2013년 4분기 | 2014년 4분기

절대빈곤율 (단위: %)

33.5

29.8

-3.6%p

2013년 4분기 | 2014년 4분기

이전 소득: 정부 또는 기업, 자녀 등이 빈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자녀 및 친인척의 용돈 등이 포함

상대빈곤율: 총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2014년 4분기 기준 93만 9000원) 미만 계층 비율

절대빈곤율: 총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 (최저생계비, 2014년 기준 1인가구 60만 3000원, 2인가구 102만 7000원) 미만인 가구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 노인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 핵심 포인트

### 치매진단의 정확도

### 치매가족 간병부담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2009년, 2011년 개정

제 1 조(목적)에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따뜻한 인정방입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사실상이 대상으로 선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구분	세부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 75 60 51 4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여부: 45 이상 51 이하: 등급외A, 51 이상 60 이하: 등급외B,C, 60 이상 75 이하: 등급외A, 75 이상 95 이하: 등급외B,C, 95 이상: 등급외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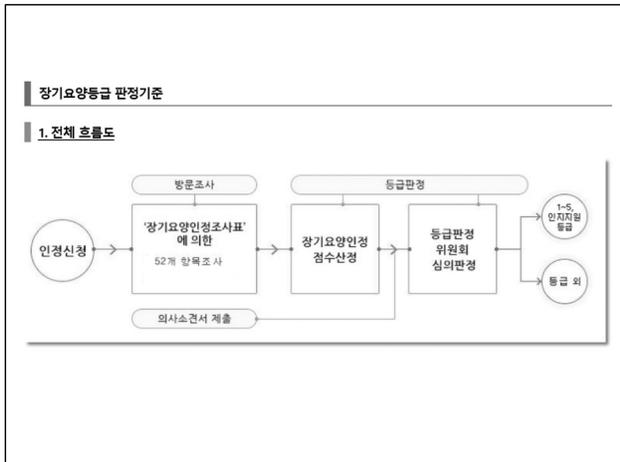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자

※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광선신청의 경우 우선으로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2.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옷벗고 입기</li> <li>식사하기</li> <li>일어나 앉기</li> <li>화장실 사용하기</li> <li>세수하기</li> <li>욕하기</li> <li>물거당기</li> <li>다변 조절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치물하기</li> <li>체위변경하기</li> <li>방북으로 나오기</li> <li>소변 조절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기억장애</li> <li>날지불인지</li> <li>장소불인지</li> <li>나이/생년월일 불인지</li> <li>지시불인지</li> <li>상황판단력 감퇴</li> <li>의사소통/연달맞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상</li> <li>환청, 환각</li> <li>울론상태, 울기 도합</li> <li>불규칙수면, 주야혼돈</li> <li>도움에 저항</li> <li>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li> <li>폭언, 위협행동</li> <li>밤으로 나가려함</li> <li>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건 양가트리기</li> <li>등/생각잡수기</li> <li>부적절한 옷입기</li> <li>대/소변 불결행위</li> </ul>
행동변화 (1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지질개관 간호</li> <li>흡인</li> <li>산소모법</li> <li>결관영양</li> <li>욕장간호</li> <li>입성통증간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노관호</li> <li>장루간호</li> <li>투석간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장애(4항목)</li> <li>우측상지</li> <li>좌측상지</li> <li>우측하지</li> <li>좌측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절제한(6항목)</li> <li>어깨관절</li> <li>팔꿈치관절</li> <li>손목 및 수저관절</li> <li>고관절</li> <li>무릎관절</li> <li>발목관절</li> </ul>
재활 (10항목)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제 23 조 (1) 재가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재가급여	서비스
<b>지원대상</b> 치매환자인 가정에 치매환자수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식사활동,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한다.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이상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를 위하여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구입비용 추가 항목</b> 
<b>지원목적</b> 치매환자수가 욕구충족을 못하고 치매환자인 가정에 방문하여 욕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b>지원간호</b> 간호사 등이 치매환자인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 및 고위 등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b>주-이전보조</b>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b>단기보조</b> 치매환자를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b>복합용구</b> 	

### 제 23 조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시설급여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도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제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현금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 2017년 노인보건의료지 사업안내(제1권)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화약농기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 의료급여장애편호장구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시설급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안호지원

\*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I.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의 의사소견서 작성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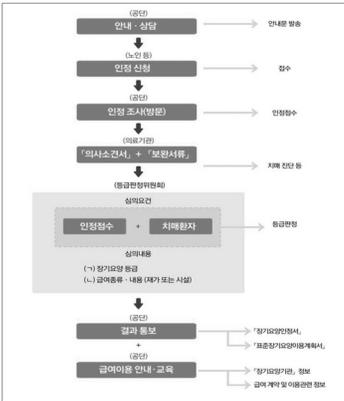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장기요양 5등급> 개요
- ▶ 신설 배경  
중년에는 신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치매환자의 경우, 배회, 공격적 행동 등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가족의 부담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 ▶ 신설 목적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중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 요건  
장기요양 인정점수(공단 조사)가 45점이상 ~ 51점미만인 자이고, 동시에 의학적으로 치매환자로 확인된 자
- ▶ 혜택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원 한도(본인부담 15%)내에서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 구체적 목적

-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가 45점이상~51점미만인 자(등급의 A)로서, 인정조사과정에서 치매질환이 있다고 보고된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에 대한 치매·진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는 치매로 판정함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2. 혈관성 치매
  - 3. 알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4. 상세불명의 치매
- 2) 장기 치매 진단을 내리게 된 치매질환 경과 등 근거 제시
- 3)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의 인지기능 감퇴, 일상생활기능 감퇴, 이상행동심리증상 등 치매로 인한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
- 4)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
- 5)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권고

### 1. 장기요양 5등급 신청·인정 절차



장기요양 1~4등급의 경우,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요양등급 판정시 기본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반면,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의사소견서'는 5등급 수급자의 선정요건의 하나인 "치매환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됨

※ 장기요양 5등급의 선정요건 : ① + ②

- ① 인정점수 45점이상 ~ 51점미만
- ② 치매환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는 치매에 한함)

따라서 인지기능검사 소견(MMSE, GDS 또는 CDR) 등 치매진단과 관련된 최소한의 근거를 서식에 마련하고, 기재하도록 함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제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2항)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받게 됨.

이때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제출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기재 내용 중 "2.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3.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4.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인한 장애, 5.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됨

따라서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 대상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작성시, 상기 "2.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항목 ~ 5.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입하도록 함

- 1) 전보공단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5등급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보공단에서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 [ ] 옆에 √ 표시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송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요청	보완서류 제출 필요 [ ]에 [ ]에 표시
※ 유증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장애, 장기요양 5등급 이상)의 신청은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발급대상자	성년함함

- 2) 신청인은 전보공단에서 제공한 아래의 서식을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에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전액 본인부담통보서」,
  - 「의사소견서 제출안내문」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서식

- 3)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 "보완서류 제출항목" 항목 [ ] 옆에 √ 표시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공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에는 제1쪽 앞면 "신청인(연인)" 항목만 작성합니다.

4)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중 “결병코드”(제1쪽 앞면), “1. 치매진단”(제1쪽 뒷면)은 필수작성 항목입니다.  
(마. 항목 제외)  
해당 항목들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필요한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 등급판정, 발급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오니,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5)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치매환자인 장기요양 5등급 예상자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진단결과,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상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 [ ] 에 √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일)전액 본인부담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내용의 잘못된 작성방법은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특별등급(노인장기요양 5등급)을 아시나요?



중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인지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 회상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가계역 할당 학습지 등
- 수단적 일상생활 할애 하기
- 정서기, 요리활동, 회상기부기, 전화하기, 계산하기 등
- 활동 프로그램 등



시 분



시 분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치매특별등급(노인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인지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의 주·야간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주·야간 보조 서비스)	사제간호사를 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최종유연 가계약 할당 횟수 등 인지도능 관련 항목을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사제간호사 방문서비스가 가능해 방문하여 호제기, 요리하기, 회상활동,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 월세, 차세대기 등의 가사서비스도 포함되지 않음
부탁관리 가계약료	간호(조부사)가 가정에서 방문하여 교육, 상담, 건강조사 제공
방문 간호	간호(조부사)가 가정에서 방문하여 교육, 상담, 건강조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5등급 급여여부(신청)를 찾아주세요.

장기요양 5등급 예상자에 대한 치매진단 의견

※ 대상의 여부를 묻는 질문은 답할양자가 적지 않습니다.

분류번호	질문항목	응답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성별(분)	성 별		
주 소	주 소		
발급구분	65세 이상자 / 65세 미만자		
구분	질문항목	답변코드	
한국표준질병·사망분류(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만성질환)	1. 당뇨병(당뇨병)의 진단	I100*	
	1-1. 초기발병 당뇨병(당뇨병)의 진단	I100.0	
	1-2. 후기발병 당뇨병(당뇨병)의 진단	I100.1	
	1-3. 비당형 또는 혼당형의 당뇨병(당뇨병)의 진단	I100.2	
	1-4. 임신성당뇨병(당뇨병)의 진단	I100.9	
	2. 혈관성 장애	I61*	
	2-1. 중성 발병의 혈관성 장애	I61.0	
	2-2. 다발성 장애	I61.1	
	2-3. 크로니컬 혈관성 장애	I61.2	
	2-4. 출혈성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성 장애	I61.3	
	2-5. 기타 혈관성 장애	I61.9	
	2-6. 상세불명의 혈관성 장애	I61.9	
	3. 골관절염(관절염)의 진단	M10*	
	3-1. 크로니컬의 진단	M10.0	
3-2. 크로니컬, 아급성(급성)의 진단	M10.1		
3-3. 만성염증성(염증성)의 진단	M10.2		
3-4.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	M10.3		
3-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인체면역결핍)의 진단	M10.4		
3-6. 무관절염 기타 만성 질환성(관절염)의 진단	M10.5		
3-7. 상세불명의 진단	M10.9		

※ 치매진단 후 3개월간 경과 관찰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5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므로 해당 「노인장기요양 신청서」에 3.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4. 이상행동·정신이상으로 인한 장애, 5. 가족부담 및 사회적 부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특필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치매 진단

가. 치매 진단일 (yyyy-MM-dd)

나. 6개월 이상 치매 전문의부  예  아니오

다. 치매약물치료 여부  예  아니오

(치매약물,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

라. 인지기능검사 시간

환자의 교육수준

문맹  무학이나 글을 읽을 수 없음  1-6년  6-12년  12년 이상

1) MMSE:  /30점

2)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또는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마. 아래 검사는 기존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만 작성

1) 우울증: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30점 또는  /15점

2) 신경심리검사(NBES, CERAD, 기타) (자료첨부 여부:  예  아니오)

3) 뇌영상 소견 (자료첨부 여부:  예  아니오)

(가) MRI 소견  검사일 (yyyy-MM-dd)

(나) CT 소견  검사일 (yyyy-MM-dd)

(다) 기타 영상  검사일 (yyyy-MM-dd)

2.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16점

가. 기억력 감퇴로 인한 장애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1) 밥 먹은 것을 잊어버리 또 먹거나 안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방금 전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 또 먹거나 안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시공간능력 감퇴로 인한 장애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1) 스프레드를 찾아오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익숙한 도로에서도 길을 잃고 실종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의 구 부분을 찾을 정도로 방향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1)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뒤처리를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옷을 혼자 입거나 벗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며, 반찬과 밥을 골고루 먹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목욕, 세수, 양치질을 혼자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 주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상행동·정신이상으로 인한 장애  /16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1) 밤 동안 자주 깨거나 잠을 안자면서 소리를 지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옷을 갈아 입거나 목욕시킬 때 팔러거나 따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하루 중일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배회증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고집이 세고 심하게 거부해서 식사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하루 중일 기분이 저지고 무기력해서 움직이지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충동적으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보호자와 떨어져 있으면 매우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1) 보호자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치매환자를 보살피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치매환자가 외출이 불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없이 치매환자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보호자도 자신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권장되는 장기요양서비스 (특히 필요성이 높은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또는 야간보조 (혼자 두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하루 중 일정시간 주·야간 보조가 필요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일정시간 방문하여 인지활동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단기보호 (혼자 두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월 15일 이내) 단기보호가 필요함)

7. 그 밖의 특기사항

※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이 필요한 그 밖의 특기 사항을 적고, 검사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된 정보

발급일	2018년 11월 06일
의사성명	정지향
의사 면허번호	제 53502호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11100915 ) 전화번호: 02-2650-5114
의료기관 주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노인장기요양보험 3~5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까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

① 장기요양보험 3~4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3~5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까

①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실확인서

- 어르신이 집에서 도저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왜 자녀가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조서류.
- 어르신이 평소에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끼니를 자주 거른다. 용변을 보는 것도 힘들어한다. 자주 넘어진다. 망상증세가 심해졌다 등)와 자녀가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록
- 신청인, 확인자 서명: 친족을 제외한 동네 이웃/관공서 직원

\*\* 별첨: A4용지 1~2장에 따로 사유내용을 자세히 적어(필요하면 사진 등도 붙여서)

③ 의사소견서 같은 어르신의 기타 증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킨슨병 등과 같은 주요 증세 이외에 어르신의 기타 증세(치매, 고혈압 등)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시 자체적으로 어르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나, 그러나 최근에 기타 증세가 일어나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됨.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구성  
년도-일반용/5등급용-전국단위일련번호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의사소견서서 발급비용청구)	발급번호	비고
14-S1-00000000	14-D1-00000000	•S1 : 일반용, 일부본인부담 •D1 : 5등급용, 일부본인부담
포털발급번호 (전액본인부담)	14-S2-00000000 14-D2-00000000	•S2 : 일반용, 전액본인부담 •D2 : 5등급용, 전액본인부담

> S(Standard) : 일반용 의사소견서  
> D(Dementia) : 5등급용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 접속 (<http://medi.nhis.or.kr>)  
- 공인인증서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화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의 "의사소견서 등록"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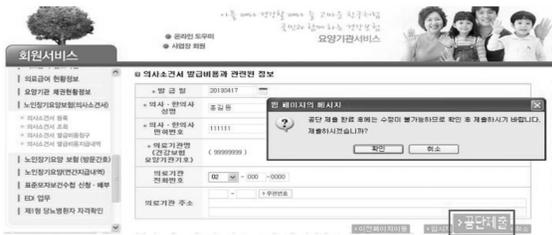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의사소견서 작성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관리 번호 또는 포털번호 입력
-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대한 의견, 의료처치 및 필요항목 순서대로 입력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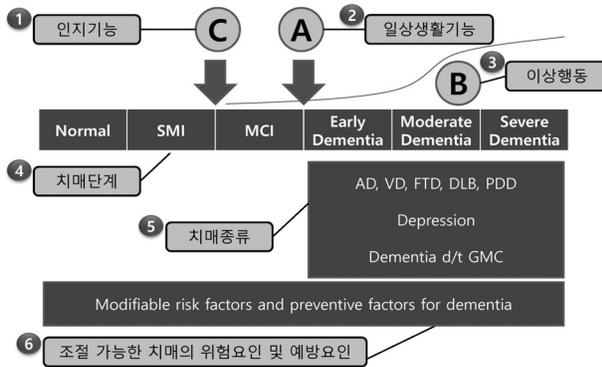
- 의사소견서 공단 제출(전송)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1. <http://medi.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클릭
3. 대상자 구분(일반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발급년월 선택
4. ① 의사소견서 등록내역 입력 (인터넷발급 대상자는 자동발체)  
② 청구내역직접입력 (서면발급한 경우 수급자 정보 직접입력)  
→ **확인** (자격점검) → **저장(전송)**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지급내역"에서 청구서 접수 및 지급내용 확인 가능

## 치매 진료의사가 알아야 할 10가지



## Q) 초기치매에서 MMSE 점수의 의미는?



## K-MMSE 정상치, SNSB자료

Table A-61. K-MMSE: Total score

연령대	문맹	0~3년	4~6년	7~9년	10~12년	13~16년	17년 이상
45~49	22.75 (2.80)	27.11 (2.41)	27.85 (1.82)	28.38 (1.49)	28.79 (1.26)	29.12 (1.13)	29.41 (1.01)
50~54	22.56 (2.85)	26.98 (2.45)	27.76 (1.85)	28.31 (1.52)	28.73 (1.30)	29.08 (1.15)	29.38 (1.03)
55~59	22.26 (2.93)	26.77 (2.52)	27.59 (1.91)	28.18 (1.56)	28.64 (1.34)	29.01 (1.18)	29.32 (1.06)
60~64	21.83 (3.05)	26.46 (2.63)	27.37 (1.98)	28.01 (1.63)	28.50 (1.39)	28.91 (1.23)	29.25 (1.10)
65~69	21.27 (3.22)	26.07 (2.77)	27.07 (2.09)	27.78 (1.71)	28.33 (1.47)	28.78 (1.29)	29.16 (1.16)
70~74	20.60 (3.43)	25.60 (2.95)	26.72 (2.23)	27.51 (1.82)	28.12 (1.56)	28.62 (1.38)	29.05 (1.24)
75~79	19.80 (3.69)	25.04 (3.18)	26.29 (2.40)	27.18 (1.97)	27.87 (1.69)	28.44 (1.49)	28.91 (1.34)
80~84	18.88 (4.03)	24.39 (3.47)	25.90 (2.62)	26.81 (2.15)	27.59 (1.84)	28.22 (1.62)	28.76 (1.46)
85~90	17.84 (4.44)	23.66 (3.82)	25.25 (2.89)	26.38 (2.37)	27.26 (2.03)	27.98 (1.79)	28.58 (1.61)

## Q) 치매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선별 (15분 전후)	정밀 (1시간 전후)
<b>C</b>	MMSE, 3MS, 시계그리기(CDT), 개정 하세가와 치매척도(HDS-R), 7분 치매선별검사(7MS), Short Blessed Test (SBT), CAMCOG-R	CERAD-NP (신경심리평가집), SNSB, ADAS-Cog, K-DRS, SIB
몬트리얼 인지평가(MoCA)		
<b>A</b>	ADL : K-ADL, S-ADL, B-ADL IADL : K-IADL, S-IADL K-DAD	
<b>B</b>	NPI BEHAVE-AD GDS(30문항, 15문항)	
치매선별 설문지(Questionnaire-Self report)		
DSQ (S-DSQ, K-DSQ), IQ-CODE, SIRQD, AD8		
치매단계평가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 Q) 치매진단의 근거는?

1. 환자 및 보호자 면담/진찰
2. MMSE / GDS 또는 CDR
3. 설문지 활용 (K-DSQ, IADL, NPI 등)
4. 신경심리검사 (CERAD, SNSB 등) 2017.10 보험등재
5. 뇌영상소견 (CT, MRI 등)

- 치매진단에 근거가 된 내용을 chart에 반드시 기록
- 치매관련평가도구 활용 (MMSE, GDS, DSQ, IADL, NPI)
-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 활용

### 9 치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오진

최근 치매오진 및 위양성 치매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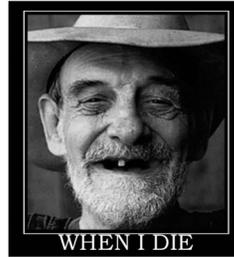


### 법원제출용 의사진단서

치매 환자의 의지/의사표현능력  
확인용 의사진단서

후견인제도 제출용 의사진단서

### 치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재산권



- 치매진단 이후 유언대용에 불만인 자녀들의 (상반된) 소송
- 유언없이 치매진단후 치매수발비용

- ✓ 치매진단의 근거 기록
- ✓ 유언능력에 대한 평가
- ✓ 성년후견제도 활용 권고

<http://one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치매노인 재산보호 법적장치 유명무실...SBS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사례 분석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06-02-15 19:51 | 최종수정 2006-02-15 19:51



강영찬씨(가명)와 형제들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강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6억원대의 양을 물려주는 대신 장학사업에 쓸 것을 바랐고, 자식들은 그 뜻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되도록 부친이 남긴 양과 관련해 아무런 세금이 나오지 않자, 경위를 알아본 강영찬씨는 면사무소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다. 아버지의 양이 이미 형수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 치매를 앓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 장시 아버지를 모신 형수에게 모든 양을 이전해 버린 것이었다.

장학사업을 원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재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강영찬씨는 형수가 의사능력이 떨어진 치매상태의 아버지를 끌고 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문제가 없고 당시 아버지가 치매상태였음을 입증하기가 힘든 상태다.

###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 9조, 제 12조).

## 성년후견제도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
- 기존의 금지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민법 제 5-9조)**부터 시행됨
- **본인 혹은 4촌까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함
-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후견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 할 수 있음

구분	과거의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용어	금지산/한정치산의 부정적 용어	부정적 용어 폐지 / 성년후견제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정신장애 및 <b>치매</b> 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범위	재산관리 중점	<b>의료, 요양 등 복지영역까지 확대</b>
후견인 선임	후견인 자격 및 순위 # 배우자 → 3촌이내 직계혈족,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 순	가정법원이 결정 (법정후견) 후견계약에 따름 (임의후견)
본인의사	잔존능력무시 탄력적 조치 불가	후견 심판시 본인의사를 청취 잔존능력존중(보충성) 탄력적 적용가능
감독기관	친족회 (형식적)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후견인 자격	자연인 1인만 가능	자연인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후견계약	본인결정 불가능	본인이 후견인과 내용 결정 가능

-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이 있음
- ✓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 ✓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 ✓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제정적)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 임의후견은 장애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  
<http://one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의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서류제출 가정법원 홈페이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할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의사진단서 1통
- 사전허탈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http://one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조제2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함.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을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 과정

- 가정법원에 성년개시 심판청구, 본인의 의사를 고려후 감정 등을 하여 성년개시 심판 시작
- 비용: 40만원-50만원 (차이 있음)
- 피성년후견이 살고 있는 병원 또는 지정병원으로 감정을 할수 있도록 법원의 의사소견서 요청서
- 대행기관: 대한치매협회: ☎02-766-0710,(support0710@hanmail.net)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특화사업)

## 치매관련 장애진단

- 장애등급판정: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지적장애** vs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용**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소득 공제 신청시 장애인 추가공제
  - 현행 「소득세법」 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치매환자 추가 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65세 미만 인 경우, **지적장애 (지능지수에 따라 3급: 50-70, 2급: 35-50, 1급: 35 미만)** 신청가능
  - 웨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특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계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 필요

## 병의 진행에 따른 보호자 교육

<p>검사 시행 후 첫 설명</p> <p>약물 쓰고 기억력의 호전이 없을 때</p> <p>약물 치료의 부작용</p> <p>“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는다”</p>	<p>의심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lusion of theft: 기억력저하에 의한 타인에게 투사</li> <li>-Infidelity delusion: 병진 보호자와의 관계가 원인이 제공</li> </ul> <p>환사가 보일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sight (+)</li> <li>-Visual Impairment: Charles-Bonnet SS</li> <li>-환사가 실재라고 믿고 두려워 할 때, 흥분 반응을 보일 때</li> </ul> <p>공격적, 성적행동</p> <p>불안, 우울, 초조</p> <p>수면장애</p> <p>배회증상: 위자주행, 지문인식등록*</p>	<p>→</p>	<p><b>요양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입소시기 결정</li> <li>&gt; 보호자의 건강상태</li> <li>&gt; 미리 예약해둘 것</li> <li>&gt; 보호자의 화해감</li> </ul> <p>&gt; 입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후기의 방문</li> <li>&gt; 사전/일일인식</li> <li>&gt; 욕욕/신체상태</li> <li>&gt; 흡연, 영양상태</li> </ul> <p>&gt; 말기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L-tube/PEG?</li> <li>&gt; 임종대리</li> </ul>
---	--	----------	--

> 최대 용량으로 올려야

> 약물 치료의 유지의 필요성

-MMSE 3점 vs 1~1.5점 지면

-일상생활유지

> 인지활동(주간보호센터, 재가인지활동)

> 지속적인 운동

> 복지관, 노인정, 평생학습관

> 노인장기요양 보험 및 치매특별등급

> 지역 치매안심센터

성년후견인제도 (한정후견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

> 중증치매: 산정특례적용 (MMSE 18점 미만 및 CDR 2점 이상)

## 감사합니다.